3-3-35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제2장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
제2장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 제8조(연구실책임자)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②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 ③해당기관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.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관한사항 3.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분석실시[별지3]후 연구주체의장에게보고에관한사항 4.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위험기계, 시설물,화학물질 등유해인자별취급 및 관리대장[별지4]작성에관한사항 5. 연구실 사고 예방계획수립 및 시행에관한사항 5. 연구실 사고 예방계획수립 및 시행에관한사항 6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관한 사항 7.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8. 그 밖에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한주요사항	를 지정하여야 한다. ②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: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 ③해당기관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.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사항 3.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실시[별지3] 후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에 관한 사항 4.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[별지4] 작성에 관한사항 5.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7.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. 연구실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보호구의 선정·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

취 해	개 정 안
현 행 	개 정 안
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	
입 	입
 제17조(보험가입) ①연구주체의 장은 청강	제17조(보험가입) ①연구주체의 장은 청강
대 내의 연안법에 적용 받는 연구활동종	대 내의 연안법에 적용 받는 연구활동종
사자에 대하여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	사자에 대하여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
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	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
및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	및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
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.	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.
1.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	1.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
│ 사고로 인하여 부상·질병 등의 손해를 │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	사고로 인하여 부상·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
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요양급여	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요양급여
로 지급한다.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	로 지급한다.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
정할 때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.	정할 때에는 20억원 이상으로 한다.
요양급여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[별표 7]과 같다.	요양급여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[별표 7]과 같다.
,,, =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



